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창업 휴직 특례를 최대 7년으로 확대(6 → 7년)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 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실 벤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천 (044-204-7700)
		담당자	사무관	이광윤 (044-204-7706)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방법으로 부여한다.

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
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⑤ 제4항-----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